

## 학생지도위원회 내규

**제1조(목적)**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생들의 면학, 학생지도 및 복지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학생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두는 학생지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처장, 각 대학 학과장 및 학생처장이 위촉하는 교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.

② 학생처장은 본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된다.

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학생처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학생활동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
2. 학생지도를 위한 각 대학간 협조에 관한 사항
3. 학생 후생·복지에 관한 사항
4.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항
5.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

**제4조(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** ① 제3조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.

1. 정책분과위원회
2. 인문사회과학캠퍼스지도분과위원회
3. 자연과학캠퍼스지도분과위원회

② 정책분과위원회는 학생관련 처장을 역임한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한다.

③ 캠퍼스별 지도분과위원회는 해당캠퍼스 소속 학과장으로 구성한다.

**제5조(분과위원회의 기능)** 학생처장의 요청에 따라 분과위원회는 전체위원회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야별로 심의할 수 있다.

1. 정책분과위원회
  - 가. 학생활동 지도 방침에 관한 사항
  - 나. 학생활동 내용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
  - 다.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
2. 캠퍼스별 지도분과위원회
  - 가. 캠퍼스별 학생활동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 - 나. 캠퍼스별 학생 후생·복지에 관한 사항
  - 다. 캠퍼스별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항
  - 라.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

**제6조(회의)** 위원장은 학생지도에 관련된 대책과 현황을 보고할 필요가 있거나, 또는 중요정책 결정에 있어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전체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**제7조(회의록)**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지원팀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0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.